합 의 서

본 합의서는 2010 년 2 월 26 일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.

“갑” 000 주소 :

“을” 000 ㈜ 대표이사 주소 :

- 다 음 -

1. “갑”은 2010 년 6 월 30 일자로 본인의 자유의사로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한다. 단, “갑”은 2010 년 4 월 1 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“을”은 본 합의서 체결 후 “갑”에게 6 월까지 각 급여일에 현재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직 처리이후 ( )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일시 지급한다. 단, “갑”이 2010 년 4 월 1 일부터 2010 년 6 월 30 일 기간 중에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2010 년 6 월 30 일까지 계산한 급여합계액에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 당사자들은 위 금원 이외에 “갑”이 근로계약관계 및 본 합의서에 의한 사직과 관련하여 “을”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.

3. “갑”은 “을”과의 근로계약 관계 및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“을”에 대하여 어떠한 민, 형사, 행정상으로 소송, 고소 · 고발, 진정, 구제신청 등 여하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
4. “갑”은 본 합의서의 체결 이후 재직 중에 “을”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, 간접적으로 취득한 “을”의 영업비밀을 “을”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쟁타사 및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및 그 조건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고,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.

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,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“갑” 김 인

“을” 000㈜ 대표이사 인